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



구 미 시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4. 6.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축산과)

현 동물보호센터는 개인 승마장을 임차해 운영하고 있어 시설 개보수 등이 어렵고, 시설 규모도 현저히 작아 정상적인 동물보호소의 기능을 하지 못하므로 구미시 반려인구에 걸맞은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여 시민의 욕구 충족 및 동물보호복지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취득재산】

□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

구분	동물보호센터 신축	유기동물 입양센터 신축	반려동물 실내외 놀이터 신축
위치	옥성면 구봉리 31-1번지 일원(시유지)		옥성면 구봉리 746-79번지 일원(시유지)
대상	연면적 1,134.84㎡ (지상1층 3개동)	연면적 200㎡ (지하1층 1개동)	연면적 1,000㎡ (지상2층)
사업기간	2021 ~ 2024년	2021 ~ 2025년	2021 ~ 2025년
총사업비	계 9,590백만원(국 900, 도 3,130, 시 5,560)		
	3,590백만원 (국 600, 도 420, 시 2,570)	1,000백만원 (국 300, 도 210, 시 490)	5,000백만원 (도 2,500, 시 2,500)
산출내역	공사비 3,413 설계용역비 86 감리비 81 시설부대비 10	공사비 932 설계용역비 50 감리비 12 시설부대비 6	공사비 4,672 설계용역비 200 감리비 115 시설부대비 13
기준가격	3,590백만원(총사업비)	1,000백만원(총사업비)	5,000백만원(총사업비)
주요시설	사무동(사무실, 상담실, 교육장) 보호동(보호실, 진료실, 격리실) 창고(사료·약품 창고)	사무실, 보호실, 상담실 미용실, 훈련실 등	실내(사무실, 놀이터, 카페 등) 실외(놀이터, 산책로 등)

○ 추진상황

- 부지선정위원회 개최 : '21. 10월
- 부지 확정 공고 : '21. 11월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22. 5월
- 동물보호센터 건축허가수리 : '23. 3월
- 유기동물 입양센터 공모사업 선정 : '23. 7월
- 동물보호센터 착공 : '23. 10월

○ 향후추진계획

- 도시계획시설결정(문화공원)추진 등 : '24. 7월
- 유기동물 입양센터 실시설계 등 : '24. 7월
- 동물보호센터 준공 : '24. 8월
- 놀이터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 이행 : '24. 11월
- 유기동물 입양센터 착공 : '25. 1월
- 실내·외 놀이터 착공 : '25. 5월
- 입양센터 준공 : '25. 7월
- 놀이터 준공 : '25. 12월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백만원)

구 분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3	2,334.84	9,590
	1.매입			
	2.교환 으로 취득			
	3.기타 취득	3	2,334.84	9,590

취득 및 처분 재산목록(총괄)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백만원)

연번	재 산 의 표 시			추정 가액	취득 시기	사 유	소유자	비고
	구분	소 재 지	수량					
계			2,334.84	9,590				
1	건물	옥성면 구봉리 31-1일원	1,135	3,590	2024년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 (동물보호센터)	구미시	신축
2	"	"	200	1,000	2025년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 (유기동물 입양센터)	"	"
3	"	옥성면 구봉리 746-79일원	1,000	5,000	2025년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 (반려동물 놀이터)	"	"

위 치 도

□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

○ 소재지 : 옥성면 구봉리 746-79번지 일원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비용추계서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공사)
2. 비용추계의 전제
 -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및 유사 사례 단가 참조하여 산정
3. 비용추계의 결과
 - 유기동물보호센터

(단위:백만원)

구분 \ 연도		연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세출	○ 공사비	927	2,486				3,413
	○ 용역비	86	81				167
	○ 설비비	7	3				10
	계	1,020	2,570				3,590

- 유기동물 입양센터

(단위:백만원)

구분 \ 연도		연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세출	○ 공사비		932				932
	○ 용역비	50	12				62
	○ 설비비	3	3				6
	계	53	947				1,000

- 반려동물 실내·외 놀이터

(단위:백만원)

구분 \ 연도		연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세출	○ 공사비		4,672				4,672
	○ 용역비	200	115				315
	○ 설비비	6	7				13
	계	206	4,794				5,000

4. 재원조달 방안

- 유기동물보호센터

(단위: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 비	200	400				600
도 비	140	280				420
시 비	366	654	750	800		2,570
민 간						
기 타						
합 계	706	1,334	750	800		3,590

- 유기동물 입양센터

(단위: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 비	90	210				300
도 비	63	147				210
시 비	147	343				490
민 간						
기 타						
합 계	300	700				1,000

- 반려동물 실내·외 놀이터

(단위: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 비						
도 비	400	2,100				2,500
시 비	400	2,100				2,500
민 간						
기 타						
합 계	800	4,200				5,000

5. 부대의견

- 구미시 반려인구에 걸맞은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으로 시민의 육구 충족 및 동물보호복지 문화 확산에 기여코자 신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6. 작성자 : 축산과 동물보호팀 우용덕(054-480-5842)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유기동물 보호센터)

(단위:백만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총계	3,590		
공사비	소계	3,413	
	건설공사비	3,167	<input type="checkbox"/> 연면적 1,135㎡ × 2,790천원/㎡ = 3,167백만원 ※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참고 ※ 유사 사례 평균 단가 및 특수요인 보정률 5% 적용 ▶ 공종별 공사비 - 건 축: 3,167백 × 86% = 2,760백만원 - 전 기: 3,167백 × 8% = 250백만원 - 통 신: 3,167백 × 3% = 86백만원 - 소 방: 3,167백 × 1% = 24백만원 - 부대시설 : 3,167백 × 2% = 47백만원
	부대비	246	<input type="checkbox"/>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등 × 1식 = 246백만원
용역비	소계	167	
	기본 및 실시설계	86	<input type="checkbox"/>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 공사비 × 건축설계 대가요율 4.72% = 86백만원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2종(보통) 도서의 양 중급 적용 - 공사비 20억 기준(최초 공사비)
	감리비	81	<input type="checkbox"/>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81백만원 ※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 산출
설비비	소계	10	
	시설부대경비	10	<input type="checkbox"/> 건설 공사비 × 시설경비요율 0.27% = 10백만원 ※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시설부대경비 요율 적용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유기동물 입양센터)

(단위:백만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총계	1,000		
공사비	소계	932	
	건설공사비	840	<input type="checkbox"/> 연면적 200㎡ × 4,200천원/㎡ = 840백만원 ※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참고 ※ 유사 사례 평균 단가 및 특수요인 보정률 5% 적용 ▶ 공종별 공사비 - 건 축: 3,167백 × 60% = 504백만원 - 전 기: 3,167백 × 12% = 101백만원 - 통 신: 3,167백 × 8% = 67백만원 - 소 방: 3,167백 × 5% = 42백만원 - 부대시설 : 3,167백 × 15% = 126백만원
	예비비	92	<input type="checkbox"/> 예비비(내부공사 등) × 1식 = 92백만원
용역비	소계	62	
	기본 및 실시설계	50	<input type="checkbox"/>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 공사비 × 건축설계 대가요율 5.98% = 50백만원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2종(보통) 도서의 양 중급 적용 - 공사비 5억 기준
	감리비	12	<input type="checkbox"/>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12백만원 ※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 산출
설비비	소계	6	
	시설부대경비	6	<input type="checkbox"/> 건설 공사비 × 시설경비요율 0.63% = 6백만원 ※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시설부대경비 요율 적용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반려동물 실내·외 놀이터)

(단위:백만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총계	5,000		
공사비	소계	4,672	
	건설공사비	4,500	<input type="checkbox"/> 연면적 1,000㎡ × 2,790천원/㎡ = 3,167백만원 ※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참고 ※ 유사 사례 평균 단가 및 특수요인 보정률 5% 적용 <input type="checkbox"/> 공종별 공사비 - 건 축: 4,500백 × 60% = 2,700백만원 - 전 기: 4,500백 × 12% = 540백만원 - 통 신: 4,500백 × 8% = 360백만원 - 소 방: 4,500백 × 5% = 225백만원 - 부대시설 : 4,500백 × 15% = 675백만원
	부대비	172	<input type="checkbox"/>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등 × 1식 = 172백만원
용역비	소계	315	
	기본 및 실시설계	200	<input type="checkbox"/>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 공사비 × 건축설계 대가요율 4.33% = 200백만원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2종(보통) 도서의 양 중급 적용 - 공사비 50억 기준
	감리비	115	<input type="checkbox"/>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115백만원 ※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 산출
설비비	소계	13	
	시설부대경비	13	<input type="checkbox"/> 건설 공사비 × 시설경비요율 0.27% = 13백만원 ※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시설부대경비 요율 적용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5. 생략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7.~ 11. 생략
- ② 생략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중요재산,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① 법 제47조 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② ~ ④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

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 ⑦ 생략

소관부서		회 계 과 (축 산 과)
입 안 자	과 장	이 건 호 (전 호 진)
	팀 장	김 은 화 (정 지 원)
	담 당 자	주 정 호 (480-5072) (우 용 덕) (480-5842)